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선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2355

제출연월일: 2024. 11. 11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O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시설인 「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」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
- O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중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

나. 추진근거

- 「진로교육법」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, 제16조 (지역진로교육센터), 제18조(진로체험지원), 제20조(협력 체계 구축 등)
- O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
다. 위탁의 필요성

- 진로·직업체험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능력 및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
- 민·관·학 네트워크를 통한 역량 있는 전문기관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·직업체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육 연계성 강화에 기여

라. 위탁사무 내용

- O 청소년 맞춤형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
- O 청소년의 창의적 직업체험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
- O 청소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학습생태계 구축
- O 그 밖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마. 위탁시설 개요

- 소 재 지: 번영로 454-1(4층) ※ 중구 마을교육지원센터와 공동사용
- O 지원시설: 사무실, 청소년실, 회의실, 강의실 등(면적: 226.08㎡)
- O 근무인원: 4명(센터장, 직원 등)
- 위탁기가: 2025. 2. 1. ~ 2028. 1. 31. (3년)
 - ※ 진로체험지원센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협조(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-250(2021. 1. 21.)
 - ①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1년 이내의 단기계약을 3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전환 추진
 - ② 신학년도 시작 전(1월~2월중), 조기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학년도 초부터 진로체험을 안정적으로 지원
- 바.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
- 사. 소요예산: 205백만원(구비 90,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5)
- 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검 토 항 목	검 토 내 용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 ○ 진로교육법 제16조(지역진로교육센터)에 의하면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 ・ 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○ 청소년 진로활동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기관에 재정보조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・운영이 가능하고, 재원조달의 다양화(공모사업 선정 등)로 민간위탁이 적절함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관련 법령 및 규정,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
3. 경제적 효율성	○직접 운영 시 자격 갖춘 직원 및 수행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○울산광역시 구·군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확보에 용이 ○ 다양한 창의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·관리가 가능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 평가의 대상으로 성과 측정 가능 ○ 보조금 정산 보고를 통해 지속적 성과 측정 가능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관련 법령 및 위·수탁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탁기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	○이용대상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, 청소년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가능

○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3. 추진일정

- O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: '24. 12. 23. ~ '25. 1. 13.(21일간)
- O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: '25. 1월
- O 위·수탁 계약 체결: '25. 1월

4. 참고사항(관련법규)

○ 「진로교육법 L

-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저소득층 가정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③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지역진로교육센터)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,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, 진로 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, 진로체험 운영·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 교육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・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- 제18조(진로체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 • 기관 · 단체 등(이하 "진로체험기관"이라 한다)에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협력 체계 구축 등)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 ·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-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)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- 제6조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 한 같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1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
- 2. 청소, 방호 등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

O 「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」

제11조(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등)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진로교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진로교육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, 구·군에는 진로체험지원센터(이하 "지역 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- 1.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총괄 관리
- 2. 지방자치단체, 진로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- 3. 진로교육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·보급 지원
- 4. 진로교육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평가
- 5. 진로 담당 교직원 등의 연수
- 6. 진로교육 관련 타 시·도와의 교류·협력 및 정보 수집
- 7. 진로교육 컨설팅
- 8.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센터의 인력배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- ④ 지역 센터는 지역 실정 및 학교 특성에 적합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· 활용지원, 진로체험 등 지역내 진로교육을 지원한다.
- ⑤ 지역 센터의 운영은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【울산광역시 중구청-교육청 진로직업체험처 개발 지원 협약서】

울산광역시 중구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긴밀하고도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협약기관의 인적・물적 자원을 교육활동에 활용하는데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내용)

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.

- 1. 협약기관 보유 인적:물적 자원을 활용한 진로직업체험처 개발 및 연속적인 운영
- 2. 제1호에 따른 진로직업체험처와 초·중등 교육활동의 유기적 연결
- 3. 기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

제3조(세부사항)

제2조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(협약기간)

협약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, 협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

제5조(효력발생)

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며, 협약내용을 증명하고 상호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관 대표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